

자체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12.

문 화 재 청

#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목적 .....	1
2. 감사대상기관 .....	1
3. 감사중점 .....	1
4. 감사기간 및 인원 .....	1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1. 수중발굴 고선박 마도 1호선 실물 복원에 관한 사항(경고) .....	3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지침에 관한 사항(기관주의) .....	7
3. 유물 등의 구입에 관한 사항(기관주의) .....	9
4. 입찰참가자격 과다 제한에 관한 사항(기관주의) .....	11
5. 전시공사 폐기물처리 정산에 관한 사항(시정) .....	13
6. 선박유류 구입에 관한 사항(시정) .....	14

7. 국유재산 등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시정) .....	16
8. 선박 구매 및 제작에 관한 사항(제도상 개선) .....	18
9. 조선통신사선 연구 및 제작에 관한 사항 (통보) .....	20

# I. 감사실시 개요

---

## 1. 감사목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해양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발굴 연구하는 기관으로 수중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과 분석, 고선박과 전통 선박 복원, 해양고고학적 유적지와 유물조사, 섬 문화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문화재청 감사규정」에 따라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자체종합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되어 감사를 실시하였다.

## 2. 감사대상기관

이번 감사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3. 감사중점

기구 현황은 4개과, 총 111명(정원 63명, 전문임기제 5명, 청원경찰 4명, 비정규직 39명)이고, 2016년 예산은 14,056백만원으로 이번 자체종합감사에서는 내부 청렴도 취약 5개 분야(예산집행, 업무지시 등)를 포함한 회계감사와 더불어 시설물 건립 및 국유재산 관리, 물품 및 유물관리 실태, 전시시설 설치, 수중 발굴, 전통 선박 복원, 비정규 직원 관리·복지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중점 점검하였다.

##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6. 10. 10. ~ 21.까지 총 10일간 감사인력 3명이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청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6. 12. 13.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 별첨

---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경 고 요 구

제 목 수중발굴 고선박 마도 1호선 실물 복원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과)

### 내 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수중 발굴 고선박 마도 1호선 복원」에 대해 (주)◆◆◆선박연구소와 물품제조계약(계약기간 '14.2.21.~'14.10.31./계약금액 396,090,000원)을 체결하였다.

### 가. 계약 감독·검사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수중 발굴 고선박 마도 1호선 복원」에 대한 사업을 발주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정 무형문화재 조선장 및 고용노동부 지정 한선기능 전승자가 운영하는 업체이거나 이들을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으며, 조달청은 입찰을 통해 (주)◆◆◆선박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결과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통보하였고, 계약상대자인 (주)◆◆◆선박연구소는 착수계와 함께 예정공정표 및 참여인력 관련 자료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제출한 후 과업을 진행하여 '14.11.21. 납품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착공 당시('14.2.26.) 제출한 '책임건조자 및 건조참여자 등 보고서'와 감사시점('16.10.20.)에 해당업체 확인한 결과 (주)◆◆◆선박연구소는 '조선장' 및 '한선기능 전승자'가 운영하거나 이들을 보유한 업체가 아니며, 다만 '한선기능 이수자'가 운영하는 업체로 입찰당시 참가자격에 미달한 업체임이 확인되었다.

상기와 같이 입찰자격에 미달한 업체이면 감독공무원은 이러한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알려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감독공무원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알리지 않아 계약의 해제·해지 없이 계약을 유지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과업을 수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해당 계약의 과업지시서에 '시운전을 실시하여 본 선박의 임무 수행에 하자가 없음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입증시킨 후 납품하여야 한다.'고 명시됨에 따라 감독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검사공무원 또한 검사 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선박연구소는 계약 완료일인 '14.11.21. 시운전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마도 1호선을 납품하였고, 실제 시운전은 '14.11.25. 경에 이루어졌으나, 감독공무원 및 검사공무원은 '14.11.21. (주)◆◆◆선박연구소가 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 나. 설계 시 참여인력 산정 관련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수중 발굴 고선박 마도 1호선 복원」에 대한 설계결과를 기초로 「수중 발굴 고선박 마도 1호선 복원」 사업을 발주하며 선체 및 의장부 인공 작업에 대한 투입인력을 총 2,160일(도목수 1명, 조선목공 8명, 특별인부 2명, 보통인부 1명 등 총 12명 각 180일 투입)로 산정(341,785,440원)하여 발주하였고, 계약 후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을 작성하며 1,786일(도목수 1명, 조선목공 8명, 특별인부 2명 각 150일 보통인부 1명 136일 투입)로 산정(283,642,876원)한 후 제출하였으나, 과업 완료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 및 복원일지를 검토한 결과 약 800일(조선목공 6명 180일, 인건비 총 141,707,972원)이 소요되었다.

비록 한선 제작에 대한 실거래가 및 설계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설계 대비 실제 제작에 투입된 참여인력은 37%이며, 인건비로 비교하면 41%만 실제 제작에 사용되어 해당 설계 시 인력 등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선체 제작 관련 설계 시 소요 인력 산출 및 실제 소요 인력 비교

설계 시(A)		계약 후 산출내역(B)		실제 투입(C)	
인원수	총인건비	인원수	총인건비	인원수	총인건비
12명, 총 2,160일	341,785,440원	12명, 총 1,786일	283,642,876원	6명, 총 800일	141,707,972원
-	-	82%(B/A)	83%(B/A)	37%(C/A)	41%(C/A)

### 3. 관련 자

소 속	직·성명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비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연구소	과 장 ○○○	'14.7.10~현재.	검사공무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과	'가 관련



“	●●연구사 ◆◆◆◆	‘14.7.10~현재.	감독공무원	“	
---	------------	--------------	-------	---	--

**조치할 사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은 앞으로 계약 시 관련서류의 검토 및 감독·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경고합니다.

또한, 추후 선박 복원 등 한선 제작시 기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적절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기 관 주 의

제 목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내 용

「국가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각 국고금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고자금집행지침」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자금배정 및 지출업무를 수행하여 하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5년 예산 요구 시 “어촌민속실 및 선박사실 전시 개편에 관한 전시물 자료 수집 및 복제비”에 대하여 210-01(일반수용비)로 예산을 편성·요구하여 예산이 확정되었고, 2015년 해당 예산을 집행하여 배 모형 등 52건의 전시물 등을 구매·제작하였으며, 수중 발굴 연구 등을 위해 예산에 반영되어있지 않은 디젤발전기, 잠수용 수중 송수신기 등을 210-01(일반수용비)로 구매하였다.

그러나 상기의 전시물 및 디젤발전기 등은 물품에 해당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430-01(자산취득비)로 편성·집행함이 타당하나 210-01(일반수용비)로 편성·집행하였고, ‘목포남항 관공선부두 육전설비공사’ 및 ‘수중 발굴전용선 접안시설 이동 설치’ 등은 시설비(420-03)로 편성·집행함이 타당한 건에 대하여도 210-09(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는 등 ‘14~’16년 중 총 19건 920,856,000원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다르게 집행하였다

일시	사용내역	금액(원)	정당 예산과목	실제 집행과목
2014.12.04	마도 1호선 실물복원	245,390,000	430-01	210-01
2014.12.26	잠수용 수중 송수신기 구매	4,118,000	430-01	210-01
2015.08.20	목포남향 관공선 부두 육전설비공사	20,889,000	420-03	210-09
2015.08.26	세계의 배 모형 공개구입	45,100,000	430-01	210-01
2015.08.26	세계의 배 모형 공개구입	33,000,000	430-01	210-01
2015.09.10	세계의 배 모형제작	118,000,000	430-01	210-01
2015.09.24	수중발굴전용선 접안시설 이동 설치	73,170,000	420-03	210-09
2015.12.15	조선통신사선 복원설계(기초설계, 3D Modeling, 조선공학분석)	47,500,000	420-01	210-01
2015.12.16	3.4전시실 개편 전시용 항해도구 구입	4,800,000	430-01	210-01
2015.12.16	3.4전시실 개편 전시용 항해도구 구입	1,500,000	430-01	210-01
2015.12.16	골동품 및 고미술품	115,445,000	430-01	210-01
2015.12.23	옛 배 그림액자 제작	1,980,000	430-01	210-01
2015.12.23	3.4전시실 전시용 유화복제	10,710,420	430-01	210-01
2015.12.23	3.4전시실 전시용 유화복제	489,580	430-01	210-01
2015.12.23	3.4전시실 개편 전시모형 제작	12,000,000	430-01	210-01
2015.12.28	디젤발전기	47,864,000	430-01	210-09
2015.12.29	세계의 배 모형제작	118,000,000	430-01	210-01
2016.05.24	전시용 배 모형제작	10,450,000	430-01	210-01
2016.08.02	전시용 배 모형제작	10,450,000	430-01	210-01
19건		920,856,000		

## 조치할 사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예산편성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기 관 주 의

제 목 유물 등의 구입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유물전시과)

내 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비봉리 배’ 등 총 470점의 전시자료를 보유하여 전시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2015년 제 3, 4전시관 개편 등을 위해 세계의 배 모형 (바사호 등 8점, 78,100,000원) 및 항해 관련 유물·외국 고서적(무선 전파 송수신기 등 35점, 111,250,000원) 등 총 43점(189,350,000원)을 구입하였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유물 관리규정」 제6조는 연구소장은 외부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때 ‘구입유물예비평가위원회’(이하 “예비평가위원회”라 한다)와 ‘구입유물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및 ‘구입유물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비평가위원회’ 등을 운영할 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구입유물예비평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구입유물 선정평가서’ 및 【별지】 제6호 ‘구입유물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상기의 규정에 따라 ‘예비평가위원회’는 ‘학예연구직’ 또는 ‘별정직’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공자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구입 대상 유물의 가격 및 가치를 평가하고, 선정위원회는 연구소장, 해당 부서 과장을 포함한 학예 연구직 등 5인으로 구성하며 ‘예비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구입대상 유물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는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구입대상 유물의 구입여부 및 구입금액에 대해 심의하여야 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홍보과는 ‘중·근세 이후 동서양 선박의 항해와 관련된 전시유물구입’ 공고(‘15.10.22.)를 하여 4개 업체(개인포함)로부터 107건, 178점을 접수한 후 ‘15.11.4. 자체 학예연구관 3명(수중발굴과 1명, 해양유물연구과 1명, 전시홍보과 1명)이 ‘구입유물예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 업체 28건, 65점을 구입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후, 외부위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만을 개최하여 21건, 36점을 114,250,000원에 구입하기로 결정하여 최종 20건, 36점을 111,250,000원에 구입하였다.

또한 비봉리배 등 24점의 배 모형을 구입 대상으로 정하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에 ‘전시자료(배 모형) 구입’ 공고(‘15.5.29.)를 하였고, 4개 업체(개인포함)로부터 11점을 접수한 후 ‘15.6.16. 자체 직원 3명(전시홍보과장, 전시홍보과 학예연구관 1명, 수중발굴과 학예연구관1명)이 ‘구입유물예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9점을 구입하기로 결정한 후 외부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6건, 8점에 대해 78,100,000원에 구입하였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상기와 같이 유물을 구입할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예비평가위원회’,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입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선정위원회’를 실시하지 않았고, 각각의 위원회 개최 시 마다 ‘구입유물예비평가서’, ‘유물선정평가서’ 및 ‘구입유물심의평가서’ 등 해당 위원회에 맞는 평가 대상 유물에 대해 각각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구입 결정의 사유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하나 이를 작성하지 않고, 유물의 평가액만을 기록한 총괄 결과표만을 작성하였다.

## 조치할 사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은 향후 유물 등을 구입 시 ‘구입유물선정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평가 대상 유물에 대한 각각의 평가서를 작성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기 관 주 의

제 목 입찰참가자격 과다 제한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해양유물연구과)

내 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①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실적으로 제한 시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 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신규업체 및 중소기업의 공공입찰참가를 막는 과도한 제한(운영지원과-6785호/2014.06.17.)이 설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공고한 입찰참가자격 과다 제한으로 인하여 ‘해상 전통선박 선체 정비’ 용역 등 3건의 사업이 2회 유찰되었으며 이후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중 ① 「신안선 3D 스캔 및 기초설계용역(2016.09.22.계약/41,200천원)」과 같은 규모가 작은 사업(2억 1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제한가능)의 경우에는 창업초기기업·소기업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수행실적 등의 항목은 최소화 내지 제외하여야 하나 “문화재관련 3D 스캔 및 3D 데이터 처리실적”, “10톤 이상 전통 한선석박(목조) 설계 실적”을 요구 하였고, ② 「해상 전통선박(해룡호, 온누리호, 조운선) 선체정비(2016.08.05.계약/38,700천원) 사업」은 5개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두었으며 선체정비와 관련이 없는 “중소기업 직접생산증명서, 돛단배 소지 업체”로 입찰참가를 제한하였다.

또한, ③ 「조선통신사선 복원용 선재 구입(2015.12.28.계약/48,000천원)」은 일정 규격의 복원용 목재를 보유한 곳은 누구나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나 나무 구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3년 이내의 문화재 보수 또는 전통선박 복원용 선재 납품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

### 조치할 사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은 앞으로 「국가계약법」 제21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조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과도하게 제한을 두어 신규업체 및 중소기업의 진입을 차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사업의 특성과 무관한 실적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시 정 요 구

제 목 전시공사 폐기물처리 정산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홍보과)

내 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은 비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14년에 ‘해양속의 한국 특별전 전시 인테리어 보조물 제작’【○○○○○○○○○○○○○○○○(주)/53,700천원/’14.11.12.~12.21.】’ ‘제2 전시실 전시개편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주)/51%, ○○○○○○○○○○○○○○○○○(주)/49% 754,392천원/’14.7.01.~11.11.】’ 를 추진하면서 전시용역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상기 2종의 사업에 대한 준공정산을 하면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정산을 누락한 상태로 기타 보험료에 대한 미납 금액만을 정산한 결과 당초 계약된 물량보다 적게 처리된 물량을 확인하지 못하여 2,249,490원이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은 ○○○○○○○○○○○○○○○○○(주)와 ○○○○○○○(주)에 대해 폐기물 처리 비용 과지급분 2,249,490원을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시 정 요 구

제 목 선박유류 구입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내 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수중 발굴 및 조사를 위해 누리안호(발굴조사선)와 씨뮤즈호(탐사선)를 운영하며, '16년 1~10월 기간 중 총 107,950 ℓ, 121,106천원의 선박 운항용 경유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16년 유류사용	누리안호(A)	씨뮤즈호(B)	합계
구 입 량(ℓ)	64,000	43,950	107,950
금 액(원)	67,920,300	53,185,700	121,106,000
ℓ당 평균구매액(원)	1061.25	1210.14	차액(B-A) : 148.89
구 입 방 법	자체 입찰	공공조달유류구매카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상기와 같이 누리안호의 경우 자체 입찰을 통해 유류회사와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유류를 구입하였고, 씨뮤즈호는 조사 및 급유 지역이 수시로 달라짐을 사유로 조달청 공공조달유류구매카드로 '16년 1~10월 기간 중 목포(15회) 및 목포외의 지역(21회)에서 유류를 구입(총 36회)하였다.

그러나 누리안호 및 씨뮤즈호가 유사 시기에 구입한 유류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아래와 같이 자체단가계약을 통해 구입한 경우 공공조달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경우보다 10%가량 저렴하였다.

씨뮤즈호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목포 지역에서 유류를 구입하고 있으므로 누리안호와 동시에 자체단가계약을 체결·운영할 필요가 있다.

구매시기	L 당 구입 단가(원)			비고
	누리안호(A)	씨뮤즈호(B)	차액(B-A)	
'16.5.4.	1,014.61	1,179.00	164.39	동일업체 구매
'16.6.16.~17.	1080.90	1,220,00	106.87	씨뮤즈호 신안 구매
'16.8.28.~30.	1090.04	1,250,00	159.96	동일지역 구매

※ 1회 구매량 : 누리안호 20,000 ℓ 이상, 씨뮤즈호 1,220 ℓ

### 조치할 사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은 앞으로 씨뮤즈호의 유류 구입 시에도 자체단가계약을 활용하여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시 정 요 구

제 목 국유재산 등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내 용

「국유재산관리법」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제①항 제2호에 따르면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는 국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등기·등록 등) 제①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등록 등 그 밖에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제①항, 제②항에 따라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국유재산관리법」 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기증 및 구입한 선박 등에 대해 국유재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2016. 10월 자체종합 감사일까지 선박 5척 및 부표 1기를 국유재산에 미등재된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

### 【선박 및 해양관련 시설 국유재산 미등재 현황】

(단위: ton/천원)

연번	대 상	제작 및 구입년도	재원	구입 및 제작가격	수량	비고
1	해룡호(서해조기잡이선)	2008년	15	113,754	1	
2	온누리호(고려시대 청자운반선)	2009년	20	222,834	1	
3	봉황호(옹기배)	2010년	20	130,000	1	
4	조선시대 조운선	2011년	33	149,655	1	
5	고려시대 조운선(마도1호선)	2014년	46	396,090	1	
6	계류장	2015년	좌 32M×2M 우 22M×2M	183,000	1	

## 조치할 사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은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 미등재된 선박 5척 및 부표 1기에 대해 국유재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제도상 개선요구

제 목 선박 구매 및 제작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 전시홍보과)

내 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199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통선박에 대해 자체건조(7척), 기증(6척), 구입(1척) 등의 방법으로 총 14척(해상 4척, 육지 전시 10척)의 선박을 총 1,285백만원을 들여 기증 및 구입하였으며, 2018년까지 조선통신사선(약 30억원 소요)을 건조할 계획이다.

보유 중인 선박에 대한 년 유지관리비용은 약 6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14~2016년) 자체 건조한 선박(7척)에 대한 활용 정도는 봉황호 승선 체험 14회(230명), 목포 해양 축제 출품, 여수 국제 범선 축제 출품 등 총 9회의 행사에 활용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1:1로 복원한 선박의 활용 실적으로 보기에 매우 저조하고, 목재의 특성상 야외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수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 【보유선박에 대한 자체활용 현황】

(단위:천원)

연번	구분	제작 년도	선박명	지출예산	보관장소		활용정도 (‘14~’16년 10월 현재)	관리부서
					바다	육지		
계	14척			1,285,270	4	10		
1	자체 제작	1997	가거도배	50,000		○		전시홍보과
2		2002	통구민배	29,000		○		"
3		2008	해룡호	130,950	○			해양유물연구과
4		2009	온누리호	253,834	○		목포해양축제(2회)	"
5		2010	봉황호	139,500	○		14회(230명) 승선 체험 목포해양축제 등(6회)	"
6		2011	조운선	181,188	○		여수국제범선출품(1회)	"
7		2014	마도 1호선	489,214		○		"

8	기증 선박	2009	부영호	기증		○		전시홍보과
9		2009	206 해동호	"		○		"
10		2008	중국선박	"		○		"
11		2000	베트남 선박	"		○		"
12		1994	남해호	"		○		"
13		1997	멍텅구리배	"		○		"
14	구입선박	2010	아우트리거	11,584		○		"

※ 2015년 기준 선박유지 관리에 58,450천원 소요

국립문화재연구소(책임운영기관)의 경우 3천만원 이상 1억원의 고가 장비를 구매할 경우에는 '장비심의위원회'에서 중복성, 활용성, 전담인력 확보, 과제 종료 후 활용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비를 구매하고 있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도 고비용이 소요되는 고가 선박을 구매 및 건조하는 경우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구입 및 제작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 조치할 사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은 고가의 선박 제작시 활용 및 복원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중복성, 활용성, 선택적 복원(1:1복원, 축소복원, 모형제작, 기록화, 실측, 주요 부위 복원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통 보

제 목 조선통신사선 연구 및 제작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

내 용

조선통신사선 복원 연구 사업은 문헌·회화·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 약 200년(1697년~1811년) 동안 일본과의 대외활동에 사용된 '조선 통신사선'의 원형 복원을 통해 관선에 대한 전통한식 구조와 기능, 기술과 성능, 형태와 의미 등을 재조명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는 조선통신사선 복원을 위해 「조선시대 통신사선 복원 연구 중기사업계획('15~'18년)」을 수립하였으며 약 24.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축소 모형제작, 3D Modeling을 통한 1:1 원형 복원선(34m×11.5m×4.5m/120톤 이상/현대식 엔진장착 500HP, 2대)을 건조하도록 되어 있고 2016.11.13.일까지 실시설계용역(전통선박 구조 및 기술방식 및 체험용 운항시스템 방식)이 완료될 예정이며, 실시설계는 추후 '여객선' 활용계획을 감안하여 현대식 엔진이 장착됨에 따라 1:1로 복원될 선박은 일정 부분(내부구조 등)이 원형과 다르게 제작될 수 밖에 없다.

### 【조선통신사선 연구 및 제작사업 관련 추진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지출예산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계 (6건)	847,800			
조선통신사선 복원 기본계획	47,500	2015.06.19. ~ 11.18.	기초설계, 3D Modeling, 조선공학분석	(재)●●●●연구원
조선통신사선 복원용 선재 보관용 창고 설치	18,000	2015.11.30. ~ 12.19.	보관 천막 하우스 설치	●● 천막기업

조선통신사선 실물복원용 선재구입	48,000	2015.12.28. ~ 12.30.	소나무 원목(대경재) 구입	(주)○○○○목재
조선통신사선 원형추정 축소모형제작	20,300	2016.09.22. ~ 12.20.	1/30 축소모형 제작	ⓂⓂⓂⓂⓂ 선박연구소
조선통신사선 복원 실시 설계용역	42,000	2016.05.18. ~ 11.13.	실시설계(내역서, 시방서 작성 등)	(재)●●●●연구원
조선통신사선 실물복원 선재구입	672,000	2016~2017	소나무 원목(대경재) 구입	현재 발주중

조선통신사선은 2016.11.13.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통신사행 항해 재현과 지속 활용을 위해 '연해구역'에 대한 항해가 가능한 선박(승선인원 70~100명)으로 부산~오사까간 항해 재현(외교부, 해양수산부, 일본 대사관 등 협의 계획)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찾는 관람객에게 항해 및 관람객 승선체험이 가능하도록 '여객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kst)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조선통신사선이 부산~오사까간 항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선박 등록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 하여야 하나 현재는 '여객선'으로 건조하여 자국 내의 '연해구역'에 대한 항해만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설계 내용으로는 '국제선박'으로 항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목선을 '국제선박'으로 승인 받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상당하다.

또한 건조된 선박이 최종 항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항만청(목포지부)의 승하선 공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까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선박직원의 최저 승무기준/200톤 미만 기준)에 따라 선장(5급 항해사), 1등 항해사(6급 항해사) 항해사, 기관장(6급 기관사)을 포함하여 총 3명의 운항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교대근무가 가능하려면 총 5명의 인원을 상시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는 자체종합감사일(2016.10.21.)까지 선박 관련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제항해 가능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후 외교적인 노력으로 부산~오사까간 항로 재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관람객 체험



승선 등 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확보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건조된 선박이 '여객선(엔진 장착)'으로 등록되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선박의 감항성과 인명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관련 검사를 정기적으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5년 기준 (최소 2~3억원 이상 수리비 발생/조선통신사선이 목선임을 감안하고 씨뮤즈호 관리비용을 토대로 추정한 금액임) 고 비용의 유지관리비가 발생되며, 지속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져야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나 건조 후 발생하는 소요 비용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다.

**【여객선 등록 시 이행하여야 할 선박의 검사 기준】**

항해구역	검사종류	검사구분	검사시기	비고
연해	정기검사	최초 항해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제2종 중간검사	1년(연차검사)		
	제2종 중간검사	2년(연차검사)		
	제1종 중간검사	3년(중간검사)		입거
	제2종 중간검사	4년(연차검사)		
	정기검사	5년(정기검사)		입거

**조치할 사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은 조선통신사선 복원 연구 사업에 대해 원형 복원, 부산~오사까간 항로 재현, 체험승선 운항인력 확보, 사후유지관리 비용 등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복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